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최 기 찬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서운기 의원 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에  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-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 및 「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·운영 규정」 제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가. 학교복합시설을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

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해 설치·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 시설, 생활체육시설, 평생교육 시설 등으로 정의함(안 제2조).

나.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
다. 학교복합시설의 기능을 규정함(안 제6조).

라. 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설치 협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 7조).

마. 학교복합시설의 개방 및 운영 위탁사항 을 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
바. 학교복합시설 설치·운영에 대한 기관 간 협의사항 및 운영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제12조)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교육위원회위원님 여러분!

○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